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’에 따라 부모배경 및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학 입학전형자료 중 자기소개서 삭제 (안 제35조 제1항 개정)
- 나. 입학전형자료와 관한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함 (안 부칙 제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성적과 자기소개서”를 “성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학전형자료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입학전형자료) ①대학(교육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,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(이하 “대학수학능력시험”이라 한다)의 성적,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인성검사를 말한다)의 <u>성과와 자기소개서</u>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	제35조(입학전형자료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대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65